



제432회 국회 (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폐철도 및 유휴부지 활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검 토 보 고

■ 송기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5145호)

2026. 2.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오 세 일

목 차

□ 송기현의원 대표발의(2215145)	1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1
III. 주요내용	3
IV. 검토의견	4
1. 제정안의 취지 및 구성 체계	4
2. 총괄 검토의견	10
3. 주요 항목별 검토	11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11
나. 기본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활용사업계획의 수립 등(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	14
다. 폐철도부지 대부 등(안 제7조)	19
라. 재정지원(안 제8조)	27
마. 부칙	29

□ 송기헌의원 대표발의(2215145)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송기헌의원 등 25인
2. 제 안 일 : 2025. 12. 11.
3. 회 부 일 : 2025. 12. 12.

II. 제안이유

철도의 전철화와 복선화에 대한 기반시설 투자가 증가하여 기존에 이용되어 오던 단선철도와 철도역들이 더 이상 사용되지 않고 폐지되면서 사용되지 않는 폐철도부지가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이렇듯 폐철도부지가 증가하고 있지만 「국유재산법」의 제약 등으로 인해 폐철도부지를 지역의 특성이나 도시 활성화 방안과 연계하여 활용하지 못하고 근시안적이고 소극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실정임. 이로 인해 전국에 방치되어 있는 폐철도부지는 주민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 발전을 가로막는 요인이 되고 있음.

또한 폐철도부지를 포함한 철도 유휴부지를 활용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훈령으로 「철도 유휴부지 활용지침」(국토교통부훈령)을 시행하고

있지만 해당 지침의 근거가 되는 상위 법률이 없어 국가철도공단의 재량에 따라 유희부지가 활용되고 있음.

이에 철도유희부지 활용을 활성화하여 주민친화공간, 문화·교육·관광 공간을 조성하고 철도유희부지 활용사업의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폐철도 및 유희부지 활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함.

Ⅲ. 주요내용

가. 이 법은 폐철도 및 철도 유희부지 활용을 활성화하고 철도 유희부지의 체계적인 관리와 효과적인 활용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유희부지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3조).

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매년 정기적으로 철도유희부지의 활용 및 관리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함(안 제4조)

라. 시장·군수 등은 철도 유희부지에 대한 활용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안 제5조).

마. 활용사업계획의 승인·변경승인은 철도산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승인 내용은 고시하도록 함(안 제6조).

바. 국가는 「국유재산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폐철도부지를 대부·사용하게 하는 경우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고 20년 이

내 사용하게 할 수 있음(안 제7조).

사. 국가는 철도유희부지 활용사업 자금의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음(안 제8조).

아.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기관에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음(안 제9
조).

자.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일부 업무를 철도 관련 기관·단
체에 위탁할 수 있다(안 제10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임미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
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14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
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
되어야 할 것임.

IV. 검토의견

1. 제정안의 취지, 구성 체계

철도 폐선부지(폐철도부지)는 「철도 유희부지 활용지침」 제2조제2호에 따르면,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4조¹⁾에 따라 철도노선이 폐지되거나 같은 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철도건설 사업으로 인하여 철도시설이 이전됨으로써 더 이상 철도차량이 운행되지 않는 철도부지를 말함.

철도 유희부지는 「철도 유희부지 활용지침」 제2조제1호에 따라 철도 폐선부지와 함께 철도부지 중 철도운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더라도 철도운영 및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철도교량 등 철도 선로의 하부

1)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4조(특정노선 폐지 등의 승인) ①철도시설관리자와 철도운영자(이하 “승인신청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특정노선 및 역의 폐지와 관련 철도서비스의 제한 또는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승인신청자가 철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노선 또는 역에 대하여 철도의 경영개선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지균형의 확보가 극히 곤란하여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

2. 제33조에 따른 보상계약체결에도 불구하고 공익서비스비용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3. 원인제공자가 공익서비스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 경우

4. 원인제공자가 제33조제5항에 따른 조정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②승인신청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승인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1. 폐지하고자 하는 특정 노선 및 역 또는 제한·중지하고자 하는 철도서비스의 내용

2. 특정 노선 및 역을 계속 운영하거나 철도서비스를 계속 제공하여야 할 경우의 원인제공자의 비용부담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특정 노선 및 역의 폐지 또는 철도서비스의 제한·중지 등과 관련된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승인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원인제공자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승인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하기로 결정된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6. 9.>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승인신청자가 제1항에 따라 특정 노선 및 역을 폐지하거나 철도서비스의 제한·중지 등의 조치를 취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체수송수단의 마련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6. 9.>

부지 등을 포함하는 개념임.²⁾

국토교통부는 폐선부지를 포함한 철도 유휴부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철도 유휴부지 활용지침」을 제정하여 운영중이고, 구체적으로 유휴부지를 보전부지, 활용부지, 기타부지 등 유형별로 분류³⁾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유휴부지별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활용사업을 시행하고 있음.⁴⁾

최근 5년간(2021~2025) 철도 유휴부지 현황을 보면, 2025년 총 유휴부지는 361만 3,300㎡이고, 이 중 폐선부지는 265만 1,900㎡, 교량하부 등 기타 유휴부지는 96만 1,400㎡인 것으로 확인되며, 최근 5년간 변동 내역을 살펴보면 2021년에 비해 폐선부지가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2) 「철도 유휴부지 활용지침」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철도 유휴부지"란 철도 폐선부지와 철도부지 중 철도운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더라도 철도 운영 및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다음의 각목의 부지를 말한다.

가. 철도교량 등 철도 선로의 하부 부지

나. 지하에 조성된 철도시설의 상부 부지

다. 철도시설의 운영에 직접 사용되고 있지 않은 잔여지

라.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한 부지

2. "철도 폐선부지"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4조에 따라 철도노선이 폐지되거나 같은 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철도건설 사업으로 인하여 철도시설이 이전됨으로써 더 이상 철도차량이 운행되지 않는 철도부지를 말한다.

3) 「철도 유휴부지 활용지침」

제3조(철도 유휴부지의 분류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 시설물의 보전가치와 특성, 활용여건 등을 고려하여 철도 유휴부지를 별표 유형별 분류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하여야 한다.

1. 보전부지 :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되었거나 문화적·역사적으로 보전가치가 있는 철도시설물의 부지

2. 활용부지 : 접근성, 배후 인구수 등을 고려할 때 활용가치가 높은 부지로서 국가 차원에서 활용계획이 없을 경우 주민친화적 공간이나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용도로 활용이 적합한 부지

3. 기타부지 : 문화적·역사적으로 보전가치가 없고 접근성, 배후 인구수 등을 고려할 때 활용가치가 낮은 부지

4) 총 유휴부지 361만 3,300㎡ 중 활용부지는 331만 8,700㎡(91.8%), 기타부지는 29만 3,900㎡(8.1%), 보전부지는 7,000㎡(0.2%)로 구성됨.

또한 2025년 전체 유희부지 중 공원 등으로 활용되고 있는 부지의 면적은 전체의 약 65.1%인 235만 3,000㎡이고, 최근 5년간 활용률(전체 유희부지 대비 활용면적)은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임.

< 최근 5년간 폐선부지 및 유희부지 현황 >

(단위 : 천㎡)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폐선부지(A)	21,843	24,071	24,735	23,653	26,519
기타 유희부지(B)	9,362	9,253	9,655	8,819	9,614
유희부지 합계 (C=A+B)	31,205	33,324	34,390	32,472	36,133
활용면적(D)	20,145	22,257	23,406	20,753	23,530
활용률(D/C)	64.6	66.8	68.1	63.9	65.1

주. 폐선부지는 미건설선(건설을 시도했지만 완전 개통에 이르지 못하고 중단된 철도 노선)을 제외한 수치임.

자료 : 국토교통부

2025년 철도 유희부지 활용 현황을 살펴보면, 대부분 자전거도로, 체육시설(공원) 등의 공공시설(24.3%), 유희부지 활용사업 부지(20.9%)⁵⁾, 농경지(19.0%)로 활용되고 있음.

5) 유희부지 활용사업은 매년 국가철도공단에서 지자체 공모를 통해 선정하는 사업을 말하고, 나머지 사업의 경우 개별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추진됨.

< 2025년 철도 유희부지 활용현황 >

(단위 : 천㎡)

용도구분	2025년도	
공공시설	5,709	(24.3%)
기타(차고지 등)	3,888	(16.5%)
농경지	4,481	(19.0%)
자산개발사업 부지	2,176	(9.2%)
유희부지 활용사업 부지	4,925	(20.9%)
레일바이크	962	(4.1%)
태양광, 물치장, 주차장 등	1,382	(5.9%)
보전부지	7	(0.1%)
합계	23,530	(100.0%)

자료 : 국토교통부

2025년 기준으로 철도 유희부지의 약 35%가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데, 활용계획 없이 방치된 철도 유희부지는 인근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악화시키고, 도시 내 단절 구간을 형성하여 도시발전을 저해할 수 있으며, 국유재산이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못함에 따른 국가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음.

한편, 철도 유희부지의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국토교통부 훈령인 「철도 유희부지 활용지침」은 철도 유희부지의 유형별 분류, 유희부지 활용계획의 수립 및 활용협약의 체결 등 유희부지 활용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절차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재정 지원이나 국유재산특례 등 활용사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적 수단들을 포함하고 있지 않음.

이에 제정안은 기존에 훈령으로 규정되어 있던 철도 유희부지의 활용을 위한 추진체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한편, 철도 유희부지 활용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폐철도부지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재정지원, 국유재산 대부 등에 관한 특례를 마련하려는 것임.

제정안은 총 10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주요 내용은 기본계획의 수립, 활용사업계획의 수립 및 승인, 재정지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제정안 구성 체계 >

폐철도 및 유희부지 활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본 칙 (10개 조문)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	실태조사
제5조	활용사업계획의 수립
제6조	활용사업계획의 승인 등
제7조	폐철도부지의 대부 등
제8조	재정 지원
제9조	관계기관 등의 협조
제10조	업무의 위탁
부 칙	
-	시행일

이와 유사한 입법례로는 폐교재산을 건전한 용도로 활용하도록 촉진하는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있음.⁶⁾

6)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조문체계는 다음과 같음.

구분	조문 제목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	폐교재산의 활용계획
제5조	대부 등에 관한 특례
제6조	영구시설물의 축조
제7조	시정명령 등
제8조	공유재산심의회
제9조	국유재산에 대한 특례
제10조	용도변경에 관한 특례
제11조	공원계획의 변경 등에 관한 특례
제12조	보조금의 지급 등

2. 총괄 검토의견

제정안은 재정지원, 국유재산 대부 등에 관한 특례 등 철도 유후부지 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수단을 마련함으로써 폐철도부지 등 철도 유후부지의 효율적인 활용과 지역 경쟁력 강화,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특히 철도 유후부지의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국가가 폐철도부지 등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음.

다만, 제정안은 철도 유후부지의 대부·사용허가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철도 유후부지의 활용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과 함께 장기간의 대부·사용 및 영구시설물 축조로 인한 해당 재산의 활용·처분가능성 제약, 다른 국유재산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3. 주요 항목별 검토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제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폐철도 및 유휴부지 활용을 활성화하고 공공의 자원인 철도 유휴부지의 체계적인 관리와 효과적인 활용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쟁력 강화와 주민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철도 유휴부지”란 폐철도부지와 철도부지 중 철도운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더라도 철도운영 및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다음 각 목의 부지를 말한다. 가. 철도교량 등 철도 선로의 하부 부지 나. 지하에 조성된 철도시설의 상부 부지 다. 철도시설의 운영에 직접 사용되고 있지 않는 잔여지 라.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한 부지 2. “폐철도부지”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4조에 따라 철도노선이 폐지되거나 같은 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철도건설 사업으로 인하여 철도시설이 이전됨으로써 더 이상 철도차량이 운행되지 않는 철도부지를 말한다. 3. “철도 유휴부지 활용사업”(이하 ‘활용사업’이라 한다)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 소유의 철도 유휴부지를 주민친화적 공간이나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해당 폐철도부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군수(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시장등”이라 한다)가 제5조제1항에 따라 활용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주민친화적 공간”이란 철도 유휴부지에 쉼터, 산책로, 생활체육시설 등의 설치를 통해 주민의 편의와 여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성하는 공공의 공간을 말한다. 5. “지역 경쟁력 강화”란 철도 유휴부지를 교육, 문화, 관광 등의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지역의 일자리 창출이나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

1) 검토의견

제정안은 폐철도부지 및 유희부지 활용을 활성화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제정안은 폐철도부지와 함께 철도교량 등 철도 선로의 하부 부지나 지하에 조성된 철도시설의 상부 부지 등도 철도 유희부지로 보아 제정안에 따른 활용사업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들 부지는 철도운영 및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철도운영 이외의 용도로 활용이 가능하므로 제정안에 포함하는 것은 타당한 측면이 있음.

또한 제정안은 철도 유희부지, 폐철도부지, 철도 유희부지 활용사업 등을 정의하고 있는데, 이는 현행 「철도 유희부지 활용지침」⁷⁾과 유사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임.

7) 「철도 유희부지 활용지침」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철도 유희부지"란 철도 폐선부지와 철도부지 중 철도운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더라도 철도운영 및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다음의 각목의 부지를 말한다.
 - 가. 철도교량 등 철도 선로의 하부 부지
 - 나. 지하에 조성된 철도시설의 상부 부지
 - 다. 철도시설의 운영에 직접 사용되고 있지 않는 잔여지
 - 라.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한 부지
2. "철도 폐선부지"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4조에 따라 철도노선이 폐지되거나 같은 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철도건설 사업으로 인하여 철도시설이 이전됨으로써 더 이상 철도차량이 운행되지 않는 철도부지를 말한다.
3. "철도 유희부지 활용사업"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 소유의 철도 유희부지를 주민친화적 공간이나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동 지침에 따라 활용계획의 수립, 제안 등의 절차를 거쳐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주민친화적 공간"이란 철도 유희부지에 쉼터, 산책로, 생활체육시설 등의 설치를 통해 주민의 편의와 여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성하는 공공의 공간을 말한다.
5. "지역 경쟁력 강화"란 철도 유희부지를 교육, 문화, 관광 등의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지역의 일자리 창출이나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정안은 활용사업의 시행주체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군수(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함)’로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 국가철도공단⁸⁾이 운영하는 철도 유희부지 활용사업의 경우에도 특·광역시의 구청장, 군수가 사업을 신청·시행하고 있고, 구청장·군수를 포함할 경우 지역 특성을 고려한 내실있는 사업계획 수립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활용사업의 시행주체에 특·광역시의 구청장, 군수를 포함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2) 국토교통부 의견

철도 유희부지 등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한 총칙 규정에 동의함.

다만, 현재도 광역시 관할 내 군수와 자치구 구청장이 철도 유희부지 활용사업을 신청하고 있다⁸⁾는 점에서 활용사업 시행 주체를 특·광역시 관할 구역 내 군수와 구청장(자치구)까지 확대할 경우 보다 내실있는 계획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8) '24년 서울 구로구, 부산 기장군 / '23년 서울 노원구, 부산 진구, 울산 울주군 등

나. 기본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활용사업계획의 수립 등(안 제3조
부터 제6조까지)

제정안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유희부지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폐철도부지의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철도유희부지의 위치 및 면적 등 현황조사 2. 철도유희부지 활용사업의 목적과 기본방향 3. 철도유희부지의 주민친화적 공간 및 교육·문화·관광 등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간 활용 수요 조사 4. 철도유희부지 활용 사업의 시행기간, 시행자, 시행방식 5. 「국토기본법」 등에 따라 수립된 상위 계획과 관련된 사항 6. 대부, 매각 등 폐철도부지의 활용과 관련된 사항 7. 그 밖에 철도유희부지의 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실태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정기적으로 철도유희부지의 활용 및 관리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 범위와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활용사업계획의 수립 및 승인 신청 등) ① 관할구역에 있는 철도유희부지의 활용사업을 시행하려는 시장등은 철도유희부지의 활용에 관한 사업계획(이하 “활용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

제정안

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활용사업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철도유휴부지가 2개 이상의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해당 시장등이 협의하여 공동으로 활용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③ 활용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활용사업의 명칭, 목적, 필요성 및 기대효과
2. 활용사업의 대상지역·위치 및 그 면적
3. 철도유휴부지 주변지역의 특성 및 토지이용현황과 개발계획 등 여건 분석
4. 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
5. 활용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철도유휴부지의 이용방법
6. 활용사업의 추진계획, 재원조달계획 및 운영·관리계획
7. 그 밖에 활용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활용사업계획의 수립 및 승인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활용사업계획의 승인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활용사업계획을 승인하거나 이를 변경승인하려면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6조에 따른 철도산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활용사업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활용사업계획의 승인 및 고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검토의견

제정안은 철도 유휴부지의 활용 및 관리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철도 유휴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철도 유휴부지의 활용사업을 시행

하려는 시장등은 활용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철도 유희부지 활용에 관한 중·장기 계획 및 활용사업계획 수립을 통해 철도 유희부지 활용사업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철도 유희부지의 효율적 활용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해 보임.

< 제정안의 주요내용 >

구분	제정안
실태조사	매년 실시
기본계획 수립	- 5년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 - 기본계획 수립, 변경시 공표 - 기본계획 포함사항 · 철도유희부지의 위치 및 면적 등 현황조사 · 철도유희부지 활용사업의 목적과 기본방향 등
활용사업계획의 수립	- 시장등이 활용사업계획 수립 - 2개 이상의 지자체 관할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공동 수립 가능 - 활용사업계획 포함사항 · 활용사업의 명칭, 목적, 필요성 및 기대효과 등
활용사업계획의 승인	- 시장등이 수립한 활용사업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국토교통부장관 승인 시 철도산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특히, 현행 「철도 유희부지 활용지침」 9)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9) 「철도 유희부지 활용지침」

제12조의2(활용심의위원회 심의 대상) 지방자치단체가 철도 유희부지 활용사업을 추진할 경우 제11조에 따른 활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

1. 도로, 상하수도 등 공공용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으로, 제2조제3호에 따른 활용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2. 제2조제3호에 따른 활용사업의 부대사업
3. 신규로 건설·개량하는 철도건설사업 실시계획에 포함되어 추진하는 활용사업
4. 기타 소규모,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심의가 불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관할 행정구역내 철도 유희부지를 활용한 사업계획을 국가철도공단에 제안하고, 공단에 설치된 철도 유희부지 활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이후 공단이 지방자치단체와 활용협약을 체결하여 활용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제정안은 국유재산의 관리권한을 가진 중앙행정기관인 국토교통부가 관계 부처 및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철도산업위원회¹⁰⁾의 심의를 거쳐 활용사업계획을 직접 승인한다는 점에서 내실 있는 사업계획 수립과 활용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한편, 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수립한 기본계획을 시·도지사 등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는데, 수립과정에서도

제13조(심의결과의 통보 등) ① 국가철도공단은 위원회에서 제8조에 따라 제안된 활용계획에 대하여 심의를 완료한 경우에는 심의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국가철도공단은 제8조에 따른 제안서 접수, 제12조에 따른 제안서 심의 등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세부운영규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철도 유희부지 활용협약의 체결) ① 국가철도공단은 위원회에서 제8조에 따라 제안된 활용사업의 계획을 채택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와 철도 유희부지 활용협약(이하 ‘활용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조건부로 제안이 채택된 경우에는 조건의 이행 후 또는 이행을 전제로 하여 활용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활용협약에는 원활한 활용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활용사업의 시행주체, 사용방식, 사용기간, 사업시행 방법, 유지관리 및 운영방안 등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유지관리나 운영단계에서 활용협약 당사자 간 이행하여야 할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국가철도공단은 활용협약 체결 전 국토교통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0)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6조(철도산업위원회) ① 철도산업에 관한 기본계획 및 중요정책 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철도산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개정 2020. 6. 9.>

1. 철도산업의 육성·발전에 관한 중요정책 사항
2. 철도산업구조개혁에 관한 중요정책 사항
3.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 등 철도시설에 관한 중요정책 사항
4. 철도안전과 철도운영에 관한 중요정책 사항
5. 철도시설관리자와 철도운영자간 상호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
6.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7. 그 밖에 철도산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미리 검토하고 위원회가 위임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9. 3. 25.>

⑤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외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것이 기본계획 수립의 실효성 제고 차원에서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또한, 제정안 제3조제1항에서는 “폐철도부지의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는데 제정안은 폐철도부지와 교량 하부 등을 포함하는 철도 유희부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철도 유희부지의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2) 국토교통부 의견

「국유재산법」 제9조에 따라 중앙관서 장이 관리하는 국유재산은 매년 관리·처분계획을 작성하여 총괄청(기재부)에 제출하고, 이를 근거로 국토교통부는 철도 유희부지를 포함한 국유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계획(계획대비 실적, 운용전망)을 작성 중임.

이러한 점에서 철도유희부지에 대한 별도의 기본계획 수립 및 이를 위한 매년 실태조사 규정은 중복 절차에 해당될 우려가 있어 보임.

한편, 현행 「철도 유희부지 활용지침」(국토부훈령)을 근거로 운영 중인 철도 유희부지 활용사업의 근거를 법으로 상향하는 데 동의함.

또한 지자체가 수립한 사업계획에 대해 관계부처,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철도산업위원회 심의를 거칠 경우 대안 제시 등 심도있는 검토와 실현 가능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다. 폐철도부지 대부 등(안 제7조)

송기현의원안

제7조(폐철도부지 대부 등) ① 국가가 「국유재산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폐철도부지를 수의계약으로 대부·사용하는 경우 그 기간은 「국유재산법」 제35조 및 제46조에도 불구하고 2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폐철도부지를 대부·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폐철도부지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그 기간이 끝나는 때에 이를 국가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대부·사용하게 하는 폐철도부지의 대부료 및 사용료는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제33조(같은 법 제4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1) 검토의견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폐철도부지 활용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데, 폐철도부지가 「국유재산법」에 따른 행정재산이면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일반재산이면 대부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일반재산의 경우 매입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현행 절차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유재산법」 제31조제1항, 제34조제1항,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7조제3항, 제40조제3항, 제51조¹¹⁾에

11) 「국유재산법」

제31조(사용허가의 방법)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하려는 경우에는 그 뜻을 공고하여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사용허가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폐철도부지를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방식으로 사용허가, 대부 및 처분이 가능함.

다만, 「국유재산법」 제35조 및 제46조¹²⁾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기간은 5년 이내이고, 대부기간은 1년에서 20년의 범위에서 경우에 따라 달리 정하고 있으며, 「국유재산법」 제18조¹³⁾에 따라 기부를 조건으로 축

제34조(사용료의 감면) ①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1의2. (생략)

2. 행정재산을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 사용허가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7조(사용허가의 방법) ①·② (생략)

③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을 자를 결정할 수 있다.

1. ~ 4. (생략)

5. 법 제34조제1항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면제의 대상이 되는 자에게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제40조(처분의 방법) ①·② (생략)

③ 일반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처분가격은 예정가격 이상으로 한다.

1 ~ 3. (생략)

4.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데에 필요한 재산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처분하는 경우

제51조(준용규정) 법 제46조에 따른 대부계약의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27조, 제28조, 제29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30조, 제31조, 제32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33조, 제34조제2항 및 제3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재산"은 "일반재산"으로, "사용허가"는 "대부계약"으로, "사용허가부"는 "대부계약부"로, "사용료"는 "대부료"로 본다.

12) 「국유재산법」

제35조(사용허가기간) ①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34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사용료의 총액이 기부를 받은 재산의 가액에 이르는 기간 이내로 한다.

②·③ (생략)

제46조(대부기간) ① 일반재산의 대부기간은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로 한다. 다만,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10년 이내로 한다.

1. 조립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와 그 정착물: 20년

2. 대부 받은 자의 비용으로 시설을 보수하는 건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10년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토지와 그 정착물: 5년

4. 그 밖의 재산: 1년

13) 「국유재산법」

제18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① 국가 외의 자는 국유재산에 건물, 교량 등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부를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

조하거나, 문화시설, 생활체육시설 등 사회기반시설을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의 승인을 받아 축조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영구시설물 축조가 허용되고 있음.

또한, 「국유재산법」 제34조제1항14)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재산을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용료를 면제받을 수 있으나,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5항 및 제6항15)에 따라 행정재산의 취득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료를 면제받는 사용허가 기간 또한 1년을 초과할 수 없음.

사용료의 감면은 「국유재산법」 제34조제3항16)에 따라 행정재산의 형태·

-
- 2.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에 소유권이 귀속되는 공공시설을 축조하는 경우
 - 2의2. 제50조제2항에 따라 매각대금을 나누어 내고 있는 일반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3. 그 밖에 국유재산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이 없고 국유재산의 활용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경우로서 대부계약의 사용목적 달성을 위하여 중앙관서의 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4. 제59조의2에 따라 개발하는 경우
 - ② (생략)
 - 14) 「국유재산법」
제34조(사용료의 감면) ①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 1. 1의2 (생략)
 - 2. 행정재산을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 사용허가하는 경우
 - 3. (생략)
 - ②·③ (생략)
 - 15)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2조(사용료의 감면) ①~④ (생략)
 - ⑤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받으려면 그 재산의 취득 계획을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⑥ 제5항에 따라 취득 계획을 제출받은 중앙관서의 장이 사용료를 면제하려는 경우 그 사용허가 기간은 1년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 ⑦ (생략)
 - 16) 「국유재산법」
제34조(사용료의 감면) ①·② (생략)
 - ③ 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의 형태·규모·내용연수 등을 고려하여 활용성이 낮거나 보수가

규모·내용연수 등을 고려하여 활용성이 낮거나 보수가 필요한 재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재산을 사용허가 하는 경우에 허용되고 있음.

< 「국유재산법」과 제정안의 국유재산특례 비교 >

구분	「국유재산법」	제정안
대부·사용기간	- 대부 ① 조림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와 그 정착물: 10년 이내 ② 대부 받은 자의 비용으로 시설을 보수하는 건물: 10년 이내 ③ ①·②를 제외한 토지와 그 정착물 5년 이내 ④ 그 밖의 재산: 1년 이내 ⑤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 10년 이내 - 사용: 5년 이내	- 대부·사용: 20년 이내
영구시설물 축조	- 원칙적 금지, 다음의 경우 예외적 허용 ① 기부를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 ②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에 소유권이 귀속되는 공공시설을 축조하는 경우 ③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하고 있는 일반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지자체나 지방공기업이 문화시설 등 사회기반시설을 해당 국유재산 소관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총괄청의 승인을 받아 축조하는 경우 ⑤ 초등학교 등에 총괄청 및 관련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학교시설을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 ⑥ 그 밖에 국유재산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이 없고 국유자산의 활용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경우로서 대부계약의 사용목적 달성을 위해 중앙	- 지방자치단체에 폐철도부지를 대부·사용하게 하는 경우 원칙적 허용. 다만, 대부기간 등이 끝나는 때에 이를 국가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을 붙여야 함

필요한 재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구분	「국유재산법」	제정안
	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용료 감면	- 사용료 면제 ①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 받은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나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사용허가하는 경우 ②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채납하려는 자가 신축기간에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③ <u>행정재산을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사용허가하는 경우</u> ④ 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을 천재지변이나 재난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 사용료 감면 : 행정재산의 형태·규모·내용연수 등을 고려하여 활용성이 낮거나 보수가 필요한 재산 등을 사용허가하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에 <u>수익계약으로 대부·사용</u>하게 한 폐철도부지의 대부료 및 사용료는 「국유재산법」에 불구하고,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u> 가능

제정안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폐철도부지를 수익계약으로 대부·사용하는 경우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20년 이내의 기간에서 대부·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대부료·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으며, 해당 부지에 폐철도부지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폐철도부지를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수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따라 국유재산에 대한 무상 사용허가
· 대부와 「국유재산법」 상 사용허가 · 대부기간을 초과하는 장기 사용
허가 등은 국유재산특례¹⁷⁾로서, 국유재산특례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를 개정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의 개정이
필요¹⁸⁾함.

이에 현재 개정안과 관련하여 임미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유재산
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5146호)이 발의되어 있는
바, 개정안은 해당 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또한, 제정안에 따라 국유재산에 대해 장기간의 대부 · 사용허가, 영
구시설물 축조 등을 허용할 경우 형식상 대부 · 사용허가에 해당하더라
도 실질적으로는 처분에 준하는 장기 고정화 효과가 발생하여 해당 재
산의 처분가능성을 제약할 우려가 있고, 이는 향후 정책 환경 변화 등에
따른 국유재산의 회수 · 재배치 또는 매각 등 유연한 처분을 곤란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17)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국유재산특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뜻한다.

1.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 제34조제1항 또는 제47조제1항에 따르지 아니한 국유재산의 사용료, 대부료, 그 밖의 사용 또는 수익에 대한 대가(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의 감면
2. 「국유재산법」 제35조제1항 또는 제46조제1항에서 정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이하 “장기 사용허가등”이라 한다)
3. 「국유재산법」 제55조제1항에 따르지 아니한 국유재산의 양여

18)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4조(국유재산특례의 제한) ① 국유재산특례는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정할 수 없다. <개정 2014. 12. 30.>

② 이 법 별표는 이 법 외의 다른 법률로 개정할 수 없다.

한편, 제정안은 폐철도부지의 대부·사용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고 교량 하부 등 폐철도부지가 아닌 철도 유희부지에 대해서는 국유재산 관련 특례를 적용하고 있지 않은데, 철도 유희부지의 활용성 제고라는 측면에서 폐철도부지와 교량 하부 등을 다르게 적용할 필요성은 크지 않아 보이므로, 교량 하부 등도 국유재산 특례 대상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음.

2) 국토교통부 의견

「국유재산법」에서도 지자체가 공용·공공용 목적으로 사용 시 수의 계약을 통해 5년 단위의 계속 갱신으로 사용이 가능하고, 20년 단위의 사용허가 제도 도입 시 국가가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해당 재산을 사용하지 못할 우려가 있어 현행 5년 단위의 허가·갱신이 바람직함.

영구시설물 축조와 관련하여 현행법으로도 공공시설 축조는 가능하며, 법 제정에 따른 무분별한 축조 허가 시 행정재산 본래 활용목적에 장애가 우려됨.

또한 현재도 공용·공공용 목적으로 사용 시 사용료의 60%를 감면 중이므로 별도의 사용료 감면 근거는 불필요한 측면이 있음.

현행 「국유재산법」을 통해서도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통해 5년

단위로 계속 갱신이 가능하고, 공용·공공용 목적으로 사용시 사용료 감면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영구시설물 축조를 무분별하게 허가할 경우 행정재산의 본래 목적으로 활용하는 데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다른 국유재산과 같이 현행 「국유재산법」 적용이 바람직함.

라. 재정지원(안 제8조)

송기현의원안
제8조(재정지원) 국가는 철도유희부지의 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활용사업에 드는 자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검토의견

제정안은 국가가 철도 유희부지의 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활용사업에 드는 자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가는 국유재산의 소유주로서 국유재산인 철도 유희부지를 효율적으로 관리·처분해야 할 주체라는 점에서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제정안은 타당한 측면이 있음.

2) 국토교통부

지자체가 활용사업으로 구상하는 사업은 대부분 공원, 산책로 등 지역주민을 위한 사업으로, 해당 사업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자체 고유사무로 분류되므로 필요한 경비는 소관 지자체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임.

또한, 이와 별개로 현재 추진 중인 활용사업 대부분이 국비 공모사업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중복 지원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마. 부칙

송기현의원안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에서는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하위법령 마련 및 관계 기관의 시행 준비 등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한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582

□ 사업개요

- (목적) 공공 자원인 철도 유희부지의 체계적 관리와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지자체가 수립한 활용계획을 제안받아 사업을 추진

* (관련근거) '철도 유희부지 활용지침'(국토부 훈령, '15.7월 제정)

- (대상부지) 철도운영 및 안전에 지장 없는 철도 유희·폐선 부지*

* ① 철도교량 등 철도 선로의 하부 부지 ② 지하에 조성된 철도시설의 상부 부지 ③ 철도시설의 운영에 직접 사용되고 있지 않는 잔여지 등

- (사업내용) 공원, 자전거도로 등 주민 친화적 공간 조성 및

창업공간 등 지역 경쟁력 강화에 활용

※ (업무분담) 국토부·공단 : 국유재산 제공 // 지자체 : 활용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

- (사업방식) 「국유재산법」에 따른 ①사용허가 또는 ②기부채납 방식

① **사용허가** : 「국유재산법」에 따른 사용허가(사용료 : 재산가액×사용면적×사용요율*)

* 지자체가 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 사업은 1%, 관광·상업목적은 5% 이상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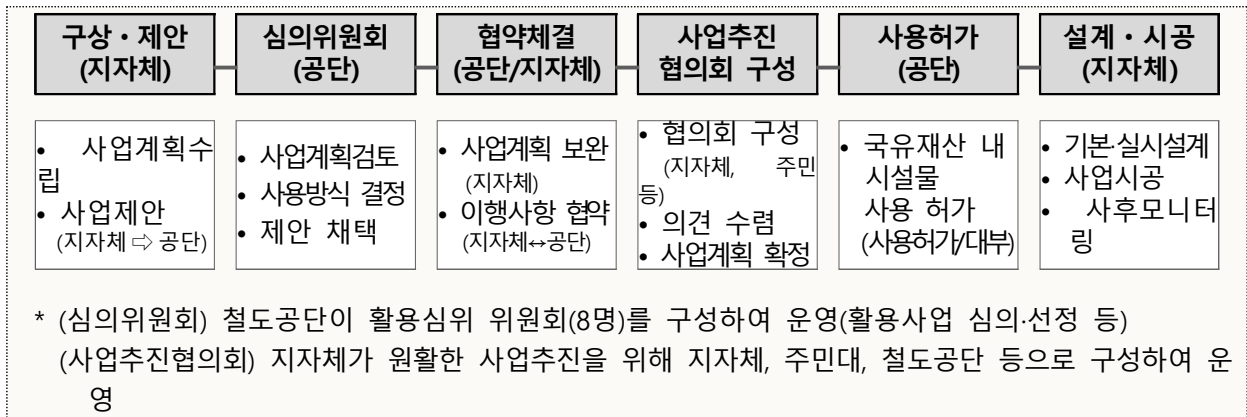
② **기부채납** : 사용료 총액이 기부가액(감정평가액)에 도달시점*까지 사용료 면제 (무상기간: 시설물 기부가액÷연사용료, 최장 20년) 후 유상 사용허가

□ 사업절차

- 철도공단에서 매년 공모(상시 공모)를 통해 전국 지자체로부터 철도 유희부지를 활용한 사업 제안서를 접수하고,

- 심의위원회를 통해 유희부지 활용사업을 선정 후 지자체가 사업을 추진

< 사업 세부 절차도 >



참고 2

철도 유휴부지 현황 * '25.12월 기준

구분	노선명	면적(㎡)		증감(㎡)	
		'24년도	'25년도		
폐선부지	합계	30,221,864	33,815,630	3,593,766	
	폐선부지	경부선(서울~부산)	1,855,917	1,890,429	34,512
		경전선(광주송정~삼랑진)	3,782,583	3,800,824	18,241
		경춘선(서울~춘천)	1,467,831	1,677,043	209,212
		군산선(舊군산~익산)	477,971	553,572	75,601
		대전남연결선(대전~옥천)	129,353	129,353	-
		수여선(수원~여주)	83,521	83,521	-
		장항선(천안~익산)	1,401,209	1,362,559	△38,650
		전라선(익산~여수)	1,091,126	1,056,067	△35,059
		중앙선(청량리~경주)	8,225,087	10,397,528	2,172,441
		영동선(영주~강릉)	715,161	829,568	114,407
		수인선(수원~인천)	57,578	59,069	1,491
		임항선(마산~마산항)	71,099	71,099	0
		호남선(대전~목포)	766,043	874,691	108,648
		동해남부선(포항~부산진)	2,710,765	2,710,775	10
		태백선(제천~백산)	526,501	531,496	4,995
		경원선(동두천~연천)	291,525	491,477	199,952
		소계	23,653,270	26,519,071	2,865,801
		미건설선	동해중부선(포항~삼척)	2,035,127	2,026,816
	동해북부선(재진~감호)		2,326,159	2,244,298	△81,861
	소계		4,361,286	4,271,114	△90,172
	산재부지		2,207,308	3,025,445	818,137
교량하부		2,023,452	2,089,988	66,536	
선로상부		226,988	227,868	880	
전체 합계		32,472,304	36,133,486	3,661,182	

참고 3

2025년 철도 유휴부지 활용사업 추진 현황

심의 연도	노선	지자체	규모 및 사업비	추진내용
2025	경원선	연천군	108,991m ² 4.6km 286억원	- 경원선 폐철도 활용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 · (소 재 지)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전곡리 225-2 등 116필지 · (사업내용) 도시숲, 체력단련장, 사계장미원 등 · (추진현황) 활용심의('25. 9)
2025	군산선	군산시	83,464m ² 3.6km 132억원	- 군산철길숲(도시바람길숲) 확대 조성사업 · (소 재 지) 군산시 사정동 564번지 등 34필지 · (사업내용) 치유정원, 휴게정원 및 산책로, 기념광장 등 · (추진현황) 활용심의('25. 9)
2025	경전선	광양시	58,088m ² 2.3km 75억원	- 광양읍 힐링예술로(路) 조성사업 · (소 재 지) 광양시 광양읍 인서리 261 등 47필지 · (사업내용) 자전거도로, 산책로, 미디어아트 공간 등 · (추진현황) 활용심의('25. 9)
2025	경춘선	춘천시	132,148m ² 4km 20억원	- 강촌 피암터널 일원 관광자원화 사업 · (소 재 지) 춘천시 남산면 강촌리 산 88-8 등 68필지 · (사업내용) 자전거도로, 산책로, 미디어아트 공간 등 · (추진현황) 활용심의('25. 9)
2025	경전선	창원시	8,160m ² 0.3km 12억원	- 행복의창 폐철도부지 산책로 연장사업 · (소 재 지) 창원시 의창구 소답동 944-2 등 23필지 · (사업내용) 랜드마크, 산책로, 운동시설, 휴게공간 등 · (추진현황) 활용심의('25. 9)
2025	경원선	양주시	29,816m ² 1.6km 44억원	- 경원선 하부공간 및 유휴부지 개설사업 · (소 재 지) 경기도 양주시 덕계동 297-10 등 57필지 · (사업내용) 조명데이트길, 피크닉 문화광장 등 · (추진현황) 활용심의('25. 9)
2025	경부선	대구시 수성구	16,806m ² 2.6km 8.5억원	- 고모역 레일 산책길 문화거점 조성사업 · (소 재 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고모동 384-1 등 4필지 · (사업내용) 레일산책로, 미디어아트 문화쉼터 등 · (추진현황) 활용심의('25. 9)
2025	경전선	창원시	11,280m ² 1.4km 6억원	- 동읍 무성마을 산책로 조성사업 · (소 재 지) 창원시 의창구 동읍 무성리 373 등 3필지 · (사업내용) 산책로 · (추진현황) 활용심의('25. 9)